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5.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4월 22일, 강대식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25.8.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
론, 소위원회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2026.4.30.) 상정,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강대식의원)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노후화 방지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기준으로 주거용 건축물 중 준공 후 30년 이상인 비율이 전국적으로 50%를 상회하고 있고,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 비주거용 건축물 또한 노후화가 심화하고 있어 향후 리모델링에 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2월 기준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전국 153개 단지 110,371세대로 추산되며, 착공은 서울 2개 단지 및 경기도 성남시 3개 단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인 주거환경 노후화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질 좋은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리모델링 활성화는 중요하고 시급한 당면과제라 할 것임. 이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통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주택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의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등 현행 리모델링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가. 리모델링 변경허가(안 제66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6조(리모델링의 허가 등) ①·② (생략) <신설>	제66조(리모델링의 허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허가를 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 ⑦ (생략)	⑤ 제4항에----- ----- ----- ----- ----- -----.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⑨ (생략)	⑨ -----제8항에----- -----제6항에----- -----.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는 현행법 제66조제1항1)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서,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현행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서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음.

그런데, 리모델링을 허가받은 자가 리모델링에 관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의 절차에 관해서는 현행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음.

1) 「주택법」

제66조(리모델링의 허가 등) ①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 기준(제75조제1항 관련)

구분	세부기준
1. 동의비율	가.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의 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다음의 사항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도의 건축물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의 소유자는 권리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의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 2) 공사비 / 3) 조합원의 비용분담 명세 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다음의 사항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 2) 공사비 / 3)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
2. 허용행위	가. 공동주택 1) 리모델링은 주택단지별 또는 동별로 한다. 2)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여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2)에 따라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수직증축 허용범위를 초과하여 증축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4)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 1)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지난 복리시설로서 공동주택과 동시에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증축은 기존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여야 하고, 증축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다.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된 경우는 주택의 증축 면적비율의 범위 안에서 증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리모델링에 관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허가를 한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되, 변경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면 별도의 허가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절차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변경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15조제4항²⁾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6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가 아닌 ‘신고’로 대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단서³⁾ 등의 입법례가 있는바, 리모델링 규제 완화의 필요성 및 리모델링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됨.

국토교통부는 효율적인 리모델링 추진을 위하여 변경허가 도입 및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신고’를 통한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2)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⑥ 사업주체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전자문서에 따른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통보받은 변경내용이 제5항 각 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실시 기한 명시(안 제6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① 제2조제25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증축하는 리모델링(이하 “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요청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제6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① ----- ----- ----- ----- ----- ----- 위하여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을-----. ② ~ ⑦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현행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2조제25호나목 및 다목4)에 따른 리모델링(이하 “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함)을 하려는 자의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한 안전진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5)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5. “리모델링”이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 2)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5) 「주택법」

하고, 같은 조 제3항6)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여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은 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수 없음.

그런데, 현행법상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언제까지 안전진단 절차를 마쳐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증축형 리모델링의 신속한 추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실시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같이 안전진단의 실시기한을 명확히 할 경우 증축형 리모델링의 절차 지연을 방지하고 절차 진행에 관한 리모델링 이해관계자의 예측 가능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위탁기관 선정, 현장조사 및 결과분석, 구조안전성 평가 등의 안전진단 절차 수행에 상

제6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구조설계를 담당할 자를 말한다)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7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①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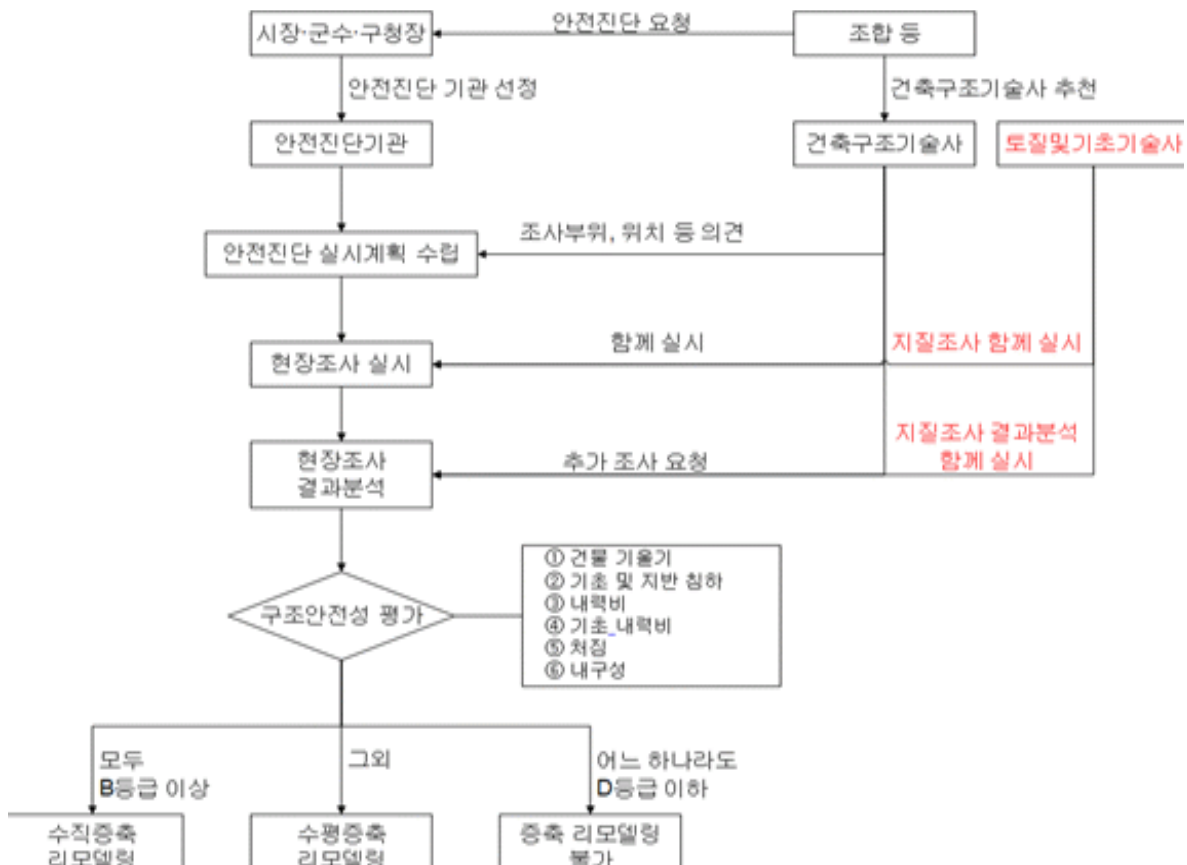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주택법」

제6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으로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은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30일’ 기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표 1]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절차



※자료: 「중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국토교통부고시) 2-1-1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업체선정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⁷⁾을 감안할 때 일률적인 안전진단 30일 이내 실시 의무화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진단의 ‘실시계획’을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7)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금액에 따라 가격입찰, 사업수행능력 평가, 적격심사 등의 절차가 필요함.

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절차 간이화(안 제69조제1항 삭제 및 제2항 등)

[illegible]

현행	개정안
의 심의 또는 허가 시 제출받은 안전성 검토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 ----- ----- -.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시장·군수·구청장은 ①현행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⁸⁾을 하려는 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⁹⁾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고(1차 안전성 검토),

②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가 신청을 받은 때 또는 리모델링 허가

8)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5. “리모델링”이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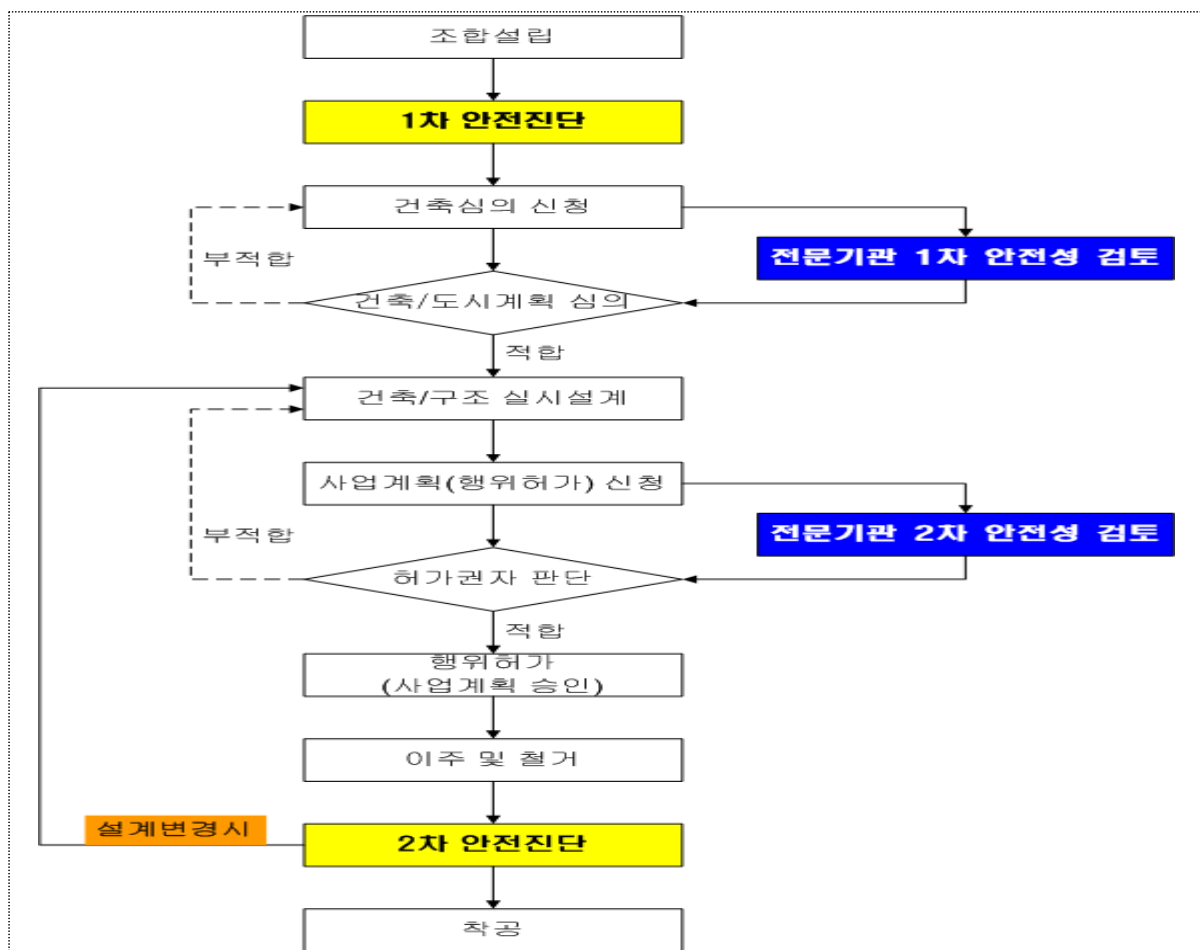
- 1)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 2)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9) 「주택법 시행령」

제79조(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① 법 제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말한다.

후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진단 결과 일정한 설계도서의 변경¹⁰⁾이 있을 때 ①의 안전성 검토를 수행한 기관에 다시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함(2차 안전성 검토).

[표 2] 리모델링 절차도



※자료: 국토교통부

현행 제도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되 허가를 담당하는 시·

10)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7조(안전성 검토 설계도서 변경사항)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설계도서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수직증축이 1개층 이상 증가하거나 수직하중이 5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2. 전단벽 양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거나 신설기초 공법 또는 전단벽의 내진보강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
3. 구조부재의 재료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20퍼센트 이상 감소되거나 말뚝 정재하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설계지지력이 구조설계에 적용된 설계지지력보다 5퍼센트 이상 감소되는 경우

군·구 담당 공무원의 구조안전 전문성이 취약할 수 있으므로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제68조)과 안전성 검토(제69조)를 거치도록 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법률 제12115호 개정(2015. 1. 1. 시행)을 통하여 도입되었음.¹¹⁾

개정안은 1차 안전성 검토(①)를 폐지하고 2차 안전성 검토(②)만 유지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신청 시 또는 리모델링 허가 후 설계도서 변경 시에만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 여부는 절차 간소화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추진 과정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리모델링 허가 이전 단계에서 전문기관의 검토를 통하여 구조안전성 충족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없는지¹²⁾ 등을 종합적으로 고

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905354호) 검토보고 69면 참조

12) 현행 법령상 1차 안전성 검토와 2차 안전성 검토의 검토사항에는 차이가 있음.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6조(안전성 검토사항 등) ① 1차 안전성 검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1. 현장조사 결과 및 증축 리모델링 판정결과(전체 등)
 2. 리모델링 전·후 구조도(유형별 대표 등)
 3.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2-1-5에 따른 기준 말뚝의 검증된 계산식에 의한 설계지지력 추정값(이하 "계산값"이라 한다)
 4. 수직증축시 안전보장 가능성(유형별 대표 등)
 5. 전문기관이 리모델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검토 필요성이 인정된 사항
 6. 그 밖에 리모델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한 사항
- ② 2차 안전성 검토 시에는 전체 등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1. 리모델링 전·후 구조도
 2. 기존 부재의 강도평가, 말뚝기초의 하중분담 및 구조설계값
 3. 구조부재의 철거 및 안전조치
 4. 구조해석 모델링, 접합부 경계조건 및 상세
 5. 하중 및 부재특성별 보강공법의 구조·시공방안, 품질확보방안[신기술·신공법의 경우 공인기관(공인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1차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지 않은 전문기관을 말한다.)이 인정한 구조·시공성능 검증결과 등 포함]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 보강설계 내역
 6. 전문기관이 리모델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검토 필요성이 인정된 사항
 7. 그 밖에 리모델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한 사항
- ③ 전문기관은 2차 안전진단시에는 말뚝 정재하시험에 입회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승인해야 한다.

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됨.

국토교통부는 수직증축 가능 여부, 보강공법의 적정성 등에 관한 객관적인 확인 없이 실시설계에 착수할 경우 허가단계에서 수직증축 층수, 평면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수정하여 매몰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고, 노후건축물의 구조물을 존치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리모델링의 특성상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최근 신기술, 고난이도의 설계안이 증가하는 추세로, 민간 설계단계에서 오류를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1차 안전성 검토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1. 말뚝 재하시험 계획서
 2. 극한지지력, 항복하중, 허용지지력 산정결과
 3. 동별 설계지지력의 결정
 4. 구조설계의 변경 여부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없 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내용을 반영함.